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가단532343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1. A 주식회사

2. B

3. C

소송대리인 D

4. E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선우

변론 종결2022. 11. 10.

판결 선고2023. 1. 12.

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24,325원 및 그 중 10,524,316원에 대하여 2021. 11. 16.부터 2022. 1. 15.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와 피고 B 사이에 2021. 7. 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1,734,76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11,734,76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E와 피고 B 사이에 2021. 7.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11,734,76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E는 원고에게 11,734,76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17. 4. 17.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F에 부담하는 대출채무 50,0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50,000,000원, 보증기한을 2022. 4. 15.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2) 피고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회사가 2021. 6. 17.부터 이자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대출금의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1. 11. 16. 주식회사 F에 대출원리금 합계 10,558,376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34,060원을 회수하여 현재 대위변제금 잔액은 10,524,316원이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곧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 소정의 비율에 의한 약정손해금과 원고가 구상채권을 보전하거나 집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보전 및 집행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비율은 2018. 2. 1.부터는 연 10%이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회수한 34,060원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회수일까지의 위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확정손해금은 9원이다[34,060원 × 10% × 1일(2021. 11. 16.~2021. 11. 16.)/365일, 원 미만 버림].

다. 피고 B의 처분행위

1) 피고 B는 2018. 8. 17. 피고 C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 C에게 2021. 7.경까지 그중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 B는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차용금 7,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2021. 7. 1.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4,000,000원, 채무자 B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2) 피고 B는 2021. 7. 21. 피고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E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B의 재산상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 무렵 피고 B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이 사건 부동산	450,000,000원	원고	10,524,325원
G	185,978,845원		
피고 C 대여금	70,000,000원		
피고 E 대여금	105,000,000원		
H	76,824,000원		
I	5,969,000원		
J	1,500,000원		
		K	1,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	450,000,000원	원고	10,524,325원
		L	4,151,000원
적극재산 합계	450,000,000원	소극재산 합계	460,947,170원

※ 유일한 적극재산인 위 아파트의 가액은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21. 7. 21.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인 450,000,000원으로 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을가 제3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법원 등기전산정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피고 B와 연대하여 10,524,325원(=대위변제금 잔액 10,524,316원 + 확정손해금 9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잔액 10,524,31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1. 11.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회사 및 피고 B에게 최후로 송달된 2022. 1. 15.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E에 대한 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다22494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 이전에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21. 6. 17.경부터 피고 회사는 이자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그로부터 5개월 정도가 경과한 2021. 11. 16.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권이 성립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F에 합계 10,558,376원을 대위변제하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등 채권 10,524,3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관련법리

(1)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의 채무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참조).

(2)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나) 피고 B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행위와 매매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 B는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으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C와 E의 악의는 각 추정된다.

2) 피고 C,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C은 피고 B의 채무초과상태를 알지 못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 E는, (ㄱ) 피고 B는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E에게 매각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ㄴ)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채권 1억 500만 원 상당이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2억 5,600만 원 상당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하고, 1억 500만 원은 기존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고, 나머지 9,000만 원은 피고 B의 배우자인 M에게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 전액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2) 피고 C의 선의 주장에 관하여 보면, 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위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 E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6호증, 을나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G 앞으로 채권최고액 227,15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피고 C 앞으로 채권최고액 84,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던 사실, ② 피고 E는 2021. 7. 22. 피고 B의 계좌로 180,000,000원, 피고 C의 계좌로 70,000,000원, 2021. 8. 6. 피고 B의 배우자인 M의 계좌로 9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③

2021. 7. 22. 피고 B의 주식회사 G에 대한 대출원리금 185,978,845원이 상환되었고, 위 은행 및 피고 C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21. 7. 27. 말소된 사실, ④ 피고 E는 2017. 3. 6.부터 2021. 4. 16.까지 피고 B에게 합계 162,224,750원 상당을 송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B가 피고 회사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방편으로 신규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 E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 E는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1억 500만 원 상당 대여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 B의 재산상태를 전혀 몰랐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과 통모하여 그가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위 채권자에게 매각하고 매매대금 채권과 위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 설령 그 매매대금이 상당한 가격이거나 상당한 가격을 초과한다고 할지라도, 위 매각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며 해당 채권자에게 악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2961, 94다2978(병합)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 E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E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취소의 범위

1) 사해행위의 목적인 부동산에 수 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그 중 일부 저당권만이 말소된 경우에도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등 참조).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의 가액과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 이후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피고 C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그보다 선순위인 주식회사 G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말소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취소와 가액배상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인 450,000,000원에서 주식회사 G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185,978,845원을 공제한 금액은 264,021,155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구상금 등 10,524,325원 및 그중 10,524,316원에 대하여 2021. 11. 16.부터 2022. 1. 15.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2. 11. 10.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 11,734,764원(=10,524,325원+지연손해금 1,210,439원²⁾)이므로,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은 더 적은 금액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11,734,76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 E는 원고에게 각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11,734,7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E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가액배상의 범위는 원고와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액의 비율대로 안분한 금액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로써, 수익자인 채권자로 하여금 안분액의 반환을 거절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위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인 경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때에 수익자 자신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 중의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총 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대한 안분액의 분배를 청구하거나,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당요구권으로써 원상회복청구와의 상계를 주장하여 그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등 참조), 수인의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법원은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할 것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등 참조), 피고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은 각 11,734,76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 E는 각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11,734,76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백소영

별지

1) 아래 채권자명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2) (= 2021. 11. 16.부터 2022. 1. 15.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75,885원 + 2022. 1. 16.부터 2022. 11. 10.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034,554원)